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0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 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총 계 | 3,083,470,000 | 92,504,100 |
| 일 반 회 계 | 2,609,325,000 | 78,279,750 |
| 특 별 회 계 | 474,145,000 | 14,224,350 |
| 공기업특별회계(지역개발기금) | 248,280,000 | 7,448,400 |
| 기 타 특 별 회 계 | 225,865,000 | 6,775,950 |
| · 강 원 도 립 대 학 운 영 | 8,746,000 | 262,380 |
| · 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 | 203,592,000 | 6,107,760 |
| · 학 교 용 지 부 담 금 | 13,527,000 | 405,810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(채무부담행위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754,537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8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